

수 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[코로나19 대응] KOICA 글로벌인재 일시귀국 지침 수립(안)

1. 아래와 관련입니다.

가. 협안전-876(2020.03.16./[지급] 코로나19 관련 일시귀국(대피) 준비 지시)

나. 안전대책위원회 긴급대응반 소집회의 결과(2020.03.17.)

2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전세계적 확산사태에 따라 KOICA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파견인력에 대한 일시귀국 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.

가. 개요

- 수립목적 :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파견인력 안전과 건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비상대피에 준하는 일시귀국 지침 마련
- 수립배경
 - 기존 비상대피 지침은 특정 국가별 사안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으며, 일시귀국 지침은 인력의 요청에 따라 국내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서, 사업인력별 규정에 따라 조건 상이
 - 급변 전세계적 코로나-19 확산 비상사태에 따라 다수 사업대상국 및 다양한 사업인력 대상에 적용할 일관된 지침 필요
- 대상국가 : KOICA 글로벌인재 파견국가 전체(WHO의 Pandemic 선언 기점)
- 대상인력
 - KOICA 봉사단, 자문단, 다자협력전문가(KMCO), UNV 대학생봉사단, 글로벌협력의사
 - 단,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인력 중 '기간제 근로자'(코디네이터, YP 등)는 제외

나. 주요 내용

- (시행) 감염병 대유행(pandemic) 상황에 대해 KOICA 본부가 사업인력의 일시귀국(비상대피)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시행
- (적용) KOICA 글로벌인재양성사업 내규 관련 조항과 해석이 상충할 시 동 지침 우선 적용
- (기간) KOICA 안전대책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일시귀국(비상대피) 기간 적용
- (소요 경비) 항공료, 화물택송료 등 출입국 소요 경비 지급지침은 별도 적용
- (수당 지급) 일시귀국 기간동안 사업인력의 수당 지급기준은 내규별 별도 적용하며, 지급기간은 최대 90일까지 지급
- (재파견) 동일국가 재파견 가능여부는 90일 이내 검토하되, 제3국으로의 재파견은 불가

